|  |  |  |
| --- | --- | --- |
| **1.1.4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2002년 6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72호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은 2002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2년 6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청정생산을 촉진하고 자원이용율을 제고하며 오염의 발생을 감소, 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청정생산이라 함은 끊임없이 설계를 개선하고 청결한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용하고 선진적인 공법기술과 설비를 이용하며 관리를 개선하고 종합이용조치를 취하여 발생원에서부터 오염을 삭감하고 자원이용효율을 제고하며 생산이나 서비스과정중 오염물의 발생과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여 인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생산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관련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청정생산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국무원과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청정생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환경보호와 자원이용, 산업발전, 구역개발등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청정생산 촉진사업을 조직화하고 협조하는 책임진다. 국무원의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 및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청정생산 촉진사업을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청정생산 촉진사업의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청정생산 촉진사업을 조직화하고 협조하는 책임을 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 및 품질기술감독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청정생산 촉진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청정생산과 관련되는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홍보하며 청정생산지식을 보급하고 청정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하는 것을 고무 격려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인민대중이 청정생산의 선전, 교육, 확대보급, 실시와 감독을 고무 격려한다.  **제2장 청정생산의 추진**  **제7조** 국무원은 청정생산실시에 유리한 재정세수 정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및 유관 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청정생산의 실시에 유리한 산업정책과 기술개발, 확대보급 정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 현급이상의 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 주관부서는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등 유관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청정생산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산업구조를 조절하며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원과 폐기물 종합이용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자원의 고효율 이용과 순환 사용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제무역,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등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정보시스템과 기술자문서비스 시스템을 건립하여야 하며, 청정생산방법과 기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수요공급과 청정생산 정책등 방면의 정보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행정주관부서와 같이 청정생산기술과 공법, 설비와 제품 등 추천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농업, 건설등 유관 행정주관부서는 관련업종 또는 지역의 청정생산지침과 기술편람을 편성하고 청정생산을 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자원 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낙후한 생산기술과 공법, 설비 및 제품에 대해 기한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 행정주관부서와 함께 기한내에 도태해야 할 생산기술, 공법, 설비 및 제품의 목록을 정하여 공포한다.  **제13조** 국무원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수요에 따라 절전, 절수, 폐기물 재활용등 환경과 자원보호방면의 상품표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국가 규정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기술과 환경자원보호에 유리한 상품의 연구, 개발 및 청정생산 기술의 시범 및 추진사업을 지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교육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기술과 관리과정을 유관 고등교육, 직업교육과 기술훈련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의 홍보와 훈련을 전개하며 국가 공무원과 기업경영관리자 및 인민대중의 청정생산의식을 제고시키며 청정생산관리와 기술요원을 배양하여야 한다.  언론출판, 방송, 문화 등 기관과 관련 사회단체는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청정생산 홍보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각급 인민정부는 절전, 절수,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홍보, 교육 등 조치를 통해 공중구매와 절전, 절수,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이로운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 실시의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청정생산의 수요에 따라 기업오염물의 배출상황에 근거하여 당해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에 오염물이 기준초과하여 배출되었거나 오염물 배출총량이 한정된 양을 초과한 오염이 심각한 기업의 이름을 정기적으로 공포하며 인민대중이 기업들의 청정생산 실시를 감독하는데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3장 청정생산의 실시**  **제18조** 신축, 개축, 확장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료 사용, 자원소모, 자원종합이용 및 오염물 발생과 처리등에 대해 분석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원이용율이 높고 오염물 발생이 적은 청정생산기술과 공법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은 기술개조 실시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청정생산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무독, 무해 또는 저독, 저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독성이 강하고 위해가 심각한 원료를 대체하여야 한다.  (2) 자원이용율이 높고 오염물 발생량이 적은 공법과 설비를 채용하여 자원이용율이 낮고 오염물 발생량이 많은 공법과 설비를 대체하여야 한다.  (3)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수, 여열등에 대하여는 종합이용 또는 순환사용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과 오염물 배출총량규제 지표에 도달할만한 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제20조** 제품의 포장물 설계는 그 생명주기내에 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무독, 무해하거나 쉽게 분해되고 회수이용이 편리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기업은 합리적인 제품포장으로 포장재의 과도사용과 포장성 폐기물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제21조** 대형 전기설비, 운수차량 및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또는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한 기술규범에 따라 제품의 주된 부품에 재료성분의 기준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22조** 농업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과 사료첨가제 등을 과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농작물 재배기술등을 개선하여 농산품의 품질향상과 무해화 및 농업생산폐기물의 자원화를 실현하므로서 농업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독, 유해한 폐기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23조** 음식점, 오락, 호텔등 서비스성 기업은 절전, 절수와 기타 환경보호에 이로운 기술과 설비를 채용하여야 하며,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소비품은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 건축공정은 절전, 절수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건축설계방안, 건축과 개보수 재료, 건축부속품 및 설비를 채용하여야 한다.  건축과 개보수 재료는 반드시 국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독, 유해물이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과 개보수 재료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한다.  **제25조** 광산자원의 탐사 및 채굴은 합리적인 자원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유리한 탐사, 채굴방법과 공법기술을 채용하며 자원이용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26조** 기업은 응당 경제적으로 기술이 실행가능한 조건하에서 생산과 서비스과정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여열등에 대하여 스스로 회수이용하거나 또는 조건을 갖춘 기타 기업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여야 한다.  **제27조** 강제회수목록에 포함된 상품이나 포장물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을 폐기하거나 포장물을 사용한 후에 동 상품이나 포장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강제회수된 상품이나 포장물의 목록과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국가는 강제회수목록에 포함된 상품과 포장물에 대하여 회수이용에 유리한 경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응당 정기적으로 강제회수상품과 포장물의 실시상황을 검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즉시 사회에 검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8조** 기업은 생산과 서비스 과정중의 자원소모 및 폐기물 발생상황에 대하여 감독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허가를 실시한다.  오염물 배출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 지방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은 오염물 배출총량지표를 초과하는 기업은 응당 청정생산의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독,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독,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청정생산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정생산 심의방법은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환경행정주관부서 및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9조** 기업은 오염물배출이 국가나 지방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달성하는 기초위에서 관할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 및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진일보된 자원절약과 오염물 배출량 삭감에 관한 자율적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동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응당 당해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기업의 명칭과 자원절약 및 오염방지 효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업은 자체 계획에 의거 국가 유관 환경관리체계인증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가 권한을 위임한 인증기구에 인증신청을 제출하고 환경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하여 청정생산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제31조**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이 심각한 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주요 오염물의 배출상황을 공포하고 인민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장려정책**  **제32조** 국가는 청정생산 표창 및 장려제도를 수립한다. 청정생산업무중 그 성적이 뛰어난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인민정부는 표창을 수여한다.  **제33조** 청정생산연구와 시범사업 및 교육등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청정생산중점기술개조 프로젝트와 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삭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중 명기된 기술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동급 재정에서 배정하는 관련 기술진보 전문자금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제34조** 국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발전기금중 응당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정생산을 실시할수 있도록 지원을 위하여 적당한 금액을 배정한다.  **제35조**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과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원료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감면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제36조** 기업은 청정생산 심의와 배양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업 경영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37조**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재료의 성분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지와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품질기술감독행정주관부서는 기한내 개선토록 명령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 개선하지 않은 경우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이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 유해한 물질이 국가기준을 초과한 건축과 개보수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상품품질법과 관련 민사, 형사법률의 규정에 의거 행정, 민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 또는 포장물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기한내 개선을 명한다.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10만위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이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정생산 심의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심의를 거쳤으나 실제 보고가 심의결과와 같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내 개선을 명한다.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상황을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공포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하고 아울러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부 칙**  **제42조**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2002年6月29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72号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于2002年6月29日通过，现予公布，自2003年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江泽民  2002年6月29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促进清洁生产，提高资源利用效率，减少和避免污染物的产生，保护和改善环境，保障人体健康，促进经济与社会可持续发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清洁生产，是指不断采取改进设计、使用清洁的能源和原料、采用先进的工艺技术与设备、改善管理、综合利用等措施，从源头削减污染，提高资源利用效率，减少或者避免生产、服务和产品使用过程中污染物的产生和排放，以减轻或者消除对人类健康和环境的危害。  **第三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从事生产和服务活动的单位以及从事相关管理活动的部门依照本法规定，组织、实施清洁生产。  **第四条** 国家鼓励和促进清洁生产。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清洁生产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以及环境保护、资源利用、产业发展、区域开发等规划。  **第五条** 国务院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负责组织、协调全国的清洁生产促进工作。国务院环境保护、计划、科学技术、农业、建设、水利和质量技术监督等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负责有关的清洁生产促进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领导本行政区域内的清洁生产促进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负责组织、协调本行政区域内的清洁生产促进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计划、科学技术、农业、建设、水利和质量技术监督等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负责有关的清洁生产促进工作。  **第六条** 国家鼓励开展有关清洁生产的科学研究、技术开发和国际合作，组织宣传、普及清洁生产知识，推广清洁生产技术。  国家鼓励社会团体和公众参与清洁生产的宣传、教育、推广、实施及监督。  **第二章 清洁生产的推行**  **第七条** 国务院应当制定有利于实施清洁生产的财政税收政策。  国务院及其有关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制定有利于实施清洁生产的产业政策、技术开发和推广政策。  **第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环境保护、计划、科学技术、农业、建设、水利等有关行政主管部门制定清洁生产的推行规划。  **第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合理规划本行政区域的经济布局，调整产业结构，发展循环经济，促进企业在资源和废物综合利用等领域进行合作，实现资源的高效利用和循环使用。  **第十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经济贸易、环境保护、计划、科学技术、农业等有关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和支持建立清洁生产信息系统和技术咨询服务体系，向社会提供有关清洁生产方法和技术、可再生利用的废物供求以及清洁生产政策等方面的信息和服务。  **第十一条** 国务院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定期发布清洁生产技术、工艺、设备和产品导向目录。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农业、建设等有关行政主管部门组织编制有关行业或者地区的清洁生产指南和技术手册，指导实施清洁生产。  **第十二条** 国家对浪费资源和严重污染环境的落后生产技术、工艺、设备和产品实行限期淘汰制度。国务院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制定并发布限期淘汰的生产技术、工艺、设备以及产品的名录。  **第十三条** 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需要批准设立节能、节水、废物再生利用等环境与资源保护方面的产品标志，并按照国家规定制定相应标准。  **第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科学技术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行政主管部门，应当指导和支持清洁生产技术和有利于环境与资源保护的产品的研究、开发以及清洁生产技术的示范和推广工作。  **第十五条** 国务院教育行政主管部门，应当将清洁生产技术和管理课程纳入有关高等教育、职业教育和技术培训体系。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行政主管部门组织开展清洁生产的宣传和培训，提高国家工作人员、企业经营管理者和公众的清洁生产意识，培养清洁生产管理和技术人员。  新闻出版、广播影视、文化等单位和有关社会团体，应当发挥各自优势做好清洁生产宣传工作。  **第十六条** 各级人民政府应当优先采购节能、节水、废物再生利用等有利于环境与资源保护的产品。  各级人民政府应当通过宣传、教育等措施，鼓励公众购买和使用节能、节水、废物再生利用等有利于环境与资源保护的产品。  **第十七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清洁生产实施的监督；可以按照促进清洁生产的需要，根据企业污染物的排放情况，在当地主要媒体上定期公布污染物超标排放或者污染物排放总量超过规定限额的污染严重企业的名单，为公众监督企业实施清洁生产提供依据。  **第三章 清洁生产的实施**  **第十八条** 新建、改建和扩建项目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对原料使用、资源消耗、资源综合利用以及污染物产生与处置等进行分析论证，优先采用资源利用率高以及污染物产生量少的清洁生产技术、工艺和设备。  **第十九条** 企业在进行技术改造过程中，应当采取以下清洁生产措施：  （一）采用无毒、无害或者低毒、低害的原料，替代毒性大、危害严重的原料；  （二）采用资源利用率高、污染物产生量少的工艺和设备，替代资源利用率低、污染物产生量多的工艺和设备；  （三）对生产过程中产生的废物、废水和余热等进行综合利用或者循环使用；  （四）采用能够达到国家或者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和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污染防治技术。  **第二十条** 产品和包装物的设计，应当考虑其在生命周期中对人类健康和环境的影响，优先选择无毒、无害、易于降解或者便于回收利用的方案。  企业应当对产品进行合理包装，减少包装材料的过度使用和包装性废物的产生。  **第二十一条** 生产大型机电设备、机动运输工具以及国务院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指定的其他产品的企业，应当按照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机构制定的技术规范，在产品的主体构件上注明材料成分的标准牌号。  **第二十二条** 农业生产者应当科学地使用化肥、农药、农用薄膜和饲料添加剂，改进种植和养殖技术，实现农产品的优质、无害和农业生产废物的资源化，防止农业环境污染。  禁止将有毒、有害废物用作肥料或者用于造田。  **第二十三条** 餐饮、娱乐、宾馆等服务性企业，应当采用节能、节水和其他有利于环境保护的技术和设备，减少使用或者不使用浪费资源、污染环境的消费品。  **第二十四条** 建筑工程应当采用节能、节水等有利于环境与资源保护的建筑设计方案、建筑和装修材料、建筑构配件及设备。  建筑和装修材料必须符合国家标准。禁止生产、销售和使用有毒、有害物质超过国家标准的建筑和装修材料。  **第二十五条** 矿产资源的勘查、开采，应当采用有利于合理利用资源、保护环境和防止污染的勘查、开采方法和工艺技术，提高资源利用水平。  **第二十六条** 企业应当在经济技术可行的条件下对生产和服务过程中产生的废物、余热等自行回收利用或者转让给有条件的其他企业和个人利用。  **第二十七条** 生产、销售被列入强制回收目录的产品和包装物的企业，必须在产品报废和包装物使用后对该产品和包装物进行回收。强制回收的产品和包装物的目录和具体回收办法，由国务院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制定。  国家对列入强制回收目录的产品和包装物，实行有利于回收利用的经济措施；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检查强制回收产品和包装物的实施情况，并及时向社会公布检查结果。具体办法由国务院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制定。  **第二十八条** 企业应当对生产和服务过程中的资源消耗以及废物的产生情况进行监测，并根据需要对生产和服务实施清洁生产审核。  污染物排放超过国家和地方规定的排放标准或者超过经有关地方人民政府核定的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企业，应当实施清洁生产审核。  使用有毒、有害原料进行生产或者在生产中排放有毒、有害物质的企业，应当定期实施清洁生产审核，并将审核结果报告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  清洁生产审核办法，由国务院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制定。  **第二十九条** 企业在污染物排放达到国家和地方规定的排放标准的基础上，可以自愿与有管辖权的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签订进一步节约资源、削减污染物排放量的协议。该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在当地主要媒体上公布该企业的名称以及节约资源、防治污染的成果。  **第三十条** 企业可以根据自愿原则，按照国家有关环境管理体系认证的规定，向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授权的认证机构提出认证申请，通过环境管理体系认证，提高清洁生产水平。  **第三十一条** 根据本法第十七条规定，列入污染严重企业名单的企业，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公布主要污染物的排放情况，接受公众监督。  **第四章 鼓励措施**  **第三十二条** 国家建立清洁生产表彰奖励制度。对在清洁生产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表彰和奖励。  **第三十三条** 对从事清洁生产研究、示范和培训，实施国家清洁生产重点技术改造项目和本法第二十九条规定的自愿削减污染物排放协议中载明的技术改造项目，列入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同级财政安排的有关技术进步专项资金的扶持范围。  **第三十四条** 在依照国家规定设立的中小企业发展基金中，应当根据需要安排适当数额用于支持中小企业实施清洁生产。  **第三十五条** 对利用废物生产产品的和从废物中回收原料的，税务机关按照国家有关规定，减征或者免征增值税。  **第三十六条** 企业用于清洁生产审核和培训的费用，可以列入企业经营成本。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七条** 违反本法第二十一条规定，未标注产品材料的成分或者不如实标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质量技术监督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处以五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八条** 违反本法第二十四条第二款规定，生产、销售有毒、有害物质超过国家标准的建筑和装修材料的，依照产品质量法和有关民事、刑事法律的规定，追究行政、民事、刑事法律责任。  **第三十九条** 违反本法第二十七条第一款规定，不履行产品或者包装物回收义务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经济贸易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处以十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条** 违反本法第二十八条第三款规定，不实施清洁生产审核或者虽经审核但不如实报告审核结果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处以十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一条** 违反本法第三十一条规定，不公布或者未按规定要求公布污染物排放情况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公布，可以并处十万元以下的罚款。  **第六章 附 则**  **第四十二条** 本法自2003年1月1日起施行。 |